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 2. 10.)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0. ~ 4. 17.)

대통령령 제 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경일
3. ~ 11.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u>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u> 공휴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u>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u> 한다.
1. 일요일	1. (현행과 같음)
2.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u> <u>및 한글날</u>	2. <u>국경일</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521